

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07.03.30.

개정 2014.06.25.

개정 2016.11.29.

개정 2018.10.30.

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‘장애인체육회’라 한다.)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간사 1인을 둔다.

② 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주무관청 부서장(과장급)과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6.11.29.>

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1.29.>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괄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심의사항 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직원의 채용, 승진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
2. 직원의 포상, 징계 등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
4.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5. 기타 회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
6. 삭제 <2018.10.30.>

제5조(회의소집 및 결의) ①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

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징계요구자 및 조사자가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.
-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5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제6조(의안설명)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설명은 기획총무팀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6.11.29.>

제7조(의사록) 의사록의 기록은 간사가 담당하며 의결내용에 대한 출석위원의 각각의 의사표시 사항과 출석확인에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
제8조(심의내용의 비밀엄수)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,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.

[본조신설 2018.10.30.]

부 칙 <2014.6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11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10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<신설 2014.6.25.>, <개정 2016.11.29.>, 처무규정으로 이동 <개정 2018.10.30.>

[별표2] <신설 2014.6.25.>, <개정 2016.11.29.>, 처무규정으로 이동 <개정 2018.10.30.>

[별표3] <신설 2014.6.25.>, 처무규정으로 이동 <개정 2018.10.30.>